

3-1 통합부채현황

- ☐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3년	2024년	증감
통합자산	2,721,306	2,691,815	△29,491
통합부채	49,022	75,612	26,590
유동부채	32,871	26,615	△6,256
장기차입부채	930	32,095	31,165
기타비유동부채	15,221	16,902	1,681

- ▶ '24년 결산 순계기준
- ▶ 우리 신안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6개로 출자·출연기관 5개를 포함하고 있음
- ▶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」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·합산된 것임
- ▶ 통합자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- ▶ 통합부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
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
3-5 우발부채 현황

우발부채는 **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**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2023년	2024년	증감
계		2,200	0	△2,200
보증채무부담행위	소계			
	자산유동화 증권①			
	금융기관 차입금②			
예산외의무부담	소계	2,200	0	△2,200
	공공토지비축협약③			
	부지매입협약④	2,200	0	△2,200
	비용부담 협약⑤			
	기타 협약⑥			
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				
채무부담행위(미발생액)				

- ▶ 관계기관(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자기관)간 상호 보증·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
- ▶ '23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(「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」(23.5.)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)
 - ※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(한국예탁결제원 기준)
- ▶ ①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*(대출채권, 매출채권 등)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
 - *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(부동산, 매출채권, 대출금 등)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
- ▶ ② 금융기관에서 건설사, 농업인, 소상공인,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
- ▶ ③ 공공택지, 산업단지, 도로·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
- ▶ ④ 산업단지,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,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
- ▶ ⑤ 사업시행자,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, 금융비용,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▶ ⑥ 교육청,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, 각종 사업비 지원 등

❖ 지급보증(보증채무부담행위)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발생연도	유형	행위명	제공받은자	보증채무액	부채계상액	채권자	제공사유
계	해당없음							

❖ 예산외 의무부담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약정유형	행위명	사업자	약정금액 (최대손실추정액, 우발부채)	총사업비	사업기간	약정내용
계	해당없음						

❖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명	운영권자	총사업비	계약기간	재정지원 협약내역	중도해지 환급금 내역	향후 부담 추정액
계	해당없음						